

學校法人 信一學園 理事會 會議錄
(2023학년도 제1차)

회의소집통보일자		2023. 3. 22.	
이사정수	10	재적이사	10

1. 일 시 : 2023년 3월 30일(목요일) 오후 2시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20 학교법인 신일학원 회의실
3. 출석이사(7명) :

이사장 이 상 균,
 이 사 박 병 대, 이 사 박 영 국, 이 사 서 유 석
 이 사 이 영 춘, 이 사 이 철 구, 이 사 정 두 현
 (가나다순)

4. 출석감사(1명) : 김 학 신
5. 결석이사(3명) : 김 윤 희, 이 세 웅, 이 원 희
6. 결석감사(1명) : 최 문 규
7. 회의안건
 - 1)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(안) 승인의 건
 - 2)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사직 처리의 건
 - 3)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임교원 전보임용의 건
 - 4) 기타안건
8. 회의진행

이상균 이사장은 법인사무직원으로부터 재적이사 10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됨을 보고 받고 개회를 선언하다. 이어서 박영국 이사의 개회기도가 있는 후 의장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다.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 낭독이 있는 후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없이 받다.

이 상 균	박 병 대	박 영 국	이 영 춘
정 두 현	이 철 구	김 학 신	서 유 석

9. 안건심의

이 사 장 : 제1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(안) 승인의 건을 논의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, 법인사무직원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.

법인사무직원 : 배포된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 변경과 휴직의 사유(육아휴직) 문구 수정을 위해 붙임1.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·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.

박영국이사 : 학교 운영을 위한 법과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.

정두현이사 : 박영국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.

이영춘이사 : 정두현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장 : 정두현 이사의 동의와 이영춘 이사의 재청이 있는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. 이에 이사장은 제1호의안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변경(안) 승인의 건은 원안(붙임 1.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·구조문대비표)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.

이 사 장 : 제2호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사직 처리의 건을 논의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, 현 강인 총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3월 31일부 총장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설명하다.

이영춘이사 : 강인 총장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, 부득이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희망한다고 하니 이를 받아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고, 안정적인 학사일정을 위해 행정 절차에 따라 총장 임용(면직) 및 정관(총장 임기) 변경을 교육부에 보고하고, 조속히 후임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.

이철구이사 : 이영춘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.

서유석이사 : 이철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장 : 이철구 이사의 동의와 서유석 이사의 재청이 있는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. 이에 이사장은 제2호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사직 처리의 건은 강인 총장의 2023년 3월 31일부 총장직 사직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.

이 사 장 : 제3호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임교원 전보임용의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, 행정부총장에게 상세설명을 요청하다.

행정부총장 : 총장을 사임하는 강인 교수의 경우 2021년 총장취임 전 승인받은 교원 임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2025년 3월 31일까지 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, 내부순환 및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노인복지 전공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2023년 4월 1일부 소속변경(전보) 임용하고

이성권	백영국	박영국	이영춘
정두현	이철구	서유석	서유석

박병대 이사 :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다.

이영춘 이사 : 박병대 이사의 제의에 동의하다.

서유석 이사 : 이영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.

이 사 장 : 이영춘 이사의 동의와 서유석 이사의 재청이 있는 후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. 이에 이사장은 제3호 의안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임교원 전보 임용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.

10. 폐 회

의장이 다른 기타 부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철구 이사의 폐회 동의와 정두현 이사의 재청이 있는 후 폐회를 선언하다. 이어서 박영국 이사가 폐회기도를 마치니 동일 오후 2시 30분이 되다.

2023년 3월 30일

이 사 장 이 상 균 이 상균

이 사 박 병 대 박병대

이 사 박 영 국 박영국

이 사 서 유 석 서유석

이 사 이 영 춘 이영춘

이 사 이 철 구 이철구

이 사 정 두 현 정두현

감 사 김 학 신 김학신

(가나다 순)

붙임 1. 학교법인 신일학원 정관 신·구조문대비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4조(임용) ① <생 략></p> <p>② 각 학교의 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생 략></p> <p>2. <생 략></p> <p>3.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⑥ <생 략></p>	<p>제34조(임용) ① <생 략></p> <p>② 각 학교의 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현행과 같음></p> <p>2. <현행과 같음></p> <p>3.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⑥ <현행과 같음></p>	<p>· 사립학교법 제53조(학교의 장의 임용) 제③항 적용</p>
<p>제35조(휴직의 사유)</p> <p>1 ~ 6. <생 략></p> <p>7. 만 8세 이하(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</p> <p>7의2 ~ 12. <생 략></p>	<p>제35조(휴직의 사유)</p> <p>1 ~ 6. <현행과 같음></p> <p>7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</p> <p>7의2 ~ 12. <현행과 같음></p>	<p>· 사립학교법 제59조(휴직의 사유) 제①항 제7호 적용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이 정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

이성권	백영후	백영대	이영훈
정두현	이찬구	김한진	서유석